

수원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02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028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3가단7089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 항소인1. G

2. H

3. I

4. J

5. K

변론 종결 2015. 5. 29.

판결 선고 2015. 6. 19.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3가단70893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용인시 처인구 M 임야 2,572m²에 관하여 원고 A, B, C, D, E에게 별지 (1) 지분비율로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들은 용인시 처인구 N 임야 12,694m²에 관하여, L은 용인시 처인구 ○ 임야 9,322m²에 관하여 각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지분비율로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심의 심판범위

① 원고 A, B, C, D, E은 피고들에 대하여 용인시 처인구 M 임야 2,572m²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②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N 임야 12,694m²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③ 원고들은 L에 대하여 ○ 임야 9,322m²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이 위 ① 청구를 인용하고, ②, ③ 청구를 각 기각하였고, 피고들만이 패소한 위 ①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②, ③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2)나)항 1행의 "을 제4호증의 1 내지 10"을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10"으로, 같은 면 2)다)항 2행의 "R"을 "R이"로, 제7면 13, 14행의 "AG"를 "AF"로 각 고쳐 쓰고,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서 당심 증인 AK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2.의 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판사최용호

판사김주미

판사권순현

별지